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제39조 관련)

종 류	구 분		여권발급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중 대행기관 수입액
			국내	재외공관	
1. 전자여권	가. 복수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26면:	26면:	26면:
			35,000원	35달러	7,700원
		58면:	58면:	58면:	
		38,000원	38달러	8,360원	
	5년	26면:	26면:	26면:	
30,000원		30달러	6,600원		
58면:	58면:	58면:			
			33,000원	33달러	7,260원
5년 미만	15,000원	15달러	3,300원		
나.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달러	3,300원	
2.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48,000원	48달러	10,560원
3. 기타	가. 여행증명서		23,000원	23달러	5,060원
	나. 남은 유효기 간 부여 여권		25,000원	25달러	5,500원
	다. 기재사항 변경		5,000원	5달러	1,100원
	라. 여권 사실증명		1,000원	1달러	220원

비고

1. 위 표 제1호에서 "전자여권"이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정보를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하여 발급되는 여권을 말한다.
2. 위 표 제3호라목에서 "여권 사실증명"이란 여권 발급기록 또는 여권 발급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내용의 증명, 여권 사본의 유효성 증명, 여권의 실효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증명을 말한다.
3. 위 표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긴급여권 발급 시 여행 목적이 발급지 국가 외에서 체류 중인 친족의 사망,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경우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여권발급수수료 및 여권발급수수료 중 대행기관 수입액을 적용한다.

여권발급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중 대행기관 수입액
국내	재외공관	
15,000원	15달러	3,300원

4. 위 표 제3호라목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여권 사실증명의 발급은 수수료를 면제한다.